

# 안전보건경영정책

(Safety & Health Management Policy)

기업명	(주)유니온플레이스
문서번호	Union-S-2024-00004
제·개정일	2024-04-05
담당부서	경영기획팀
담당자	안태승 차장



유니온플레이스는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 및 관리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정책을 제정한다.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정책은 유니온플레이스(이하 회사)의 사업운영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질병 및 재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삶의 지속가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본 정책의 적용 대상은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과 사내 도급사업 근로자로 하며, 규정 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 제3조(실행체계)

본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회사는 내부적으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하며, 보유중인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행계획 수립, 유해위험요인 파악, 안전보건 증진활동 추진, 안전보건 이행실적 평가, 이행실적 분석 및 개선조치 마련 등의 순환과정(Plan-Do-Check-Action)을 따라야 한다.

### 제4조(안전보건경영방침)

- ① 사업주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 ②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사업주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회사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회사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해야 한다.

### 제5조(재해예방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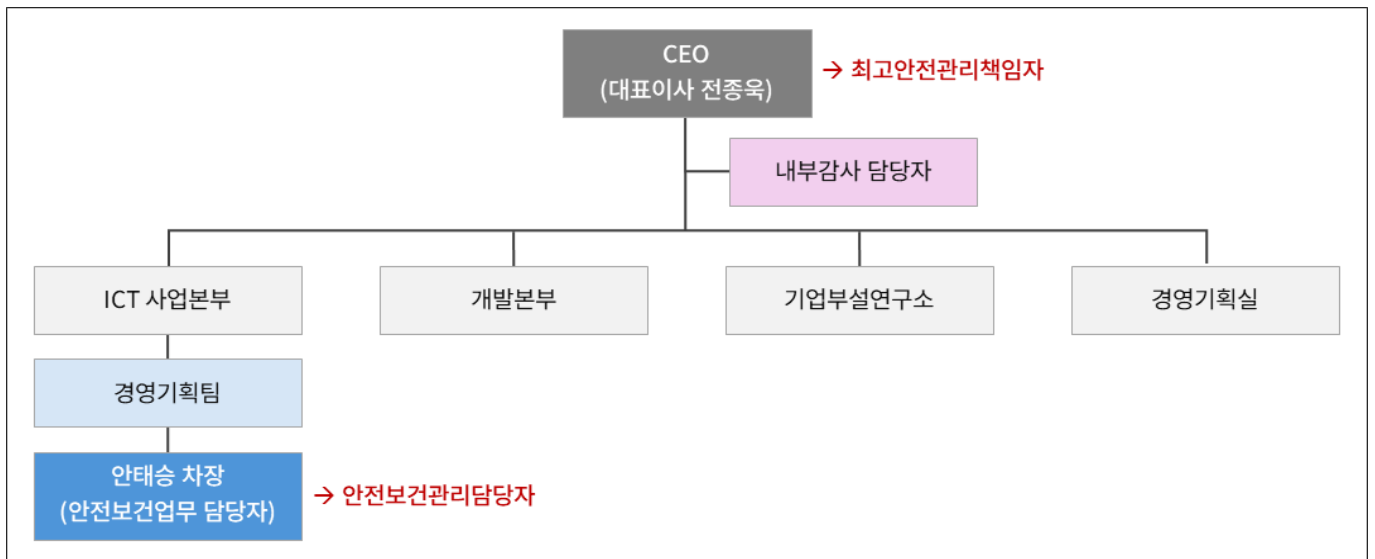
- ① 회사는 사업영위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 밖의 안전보건 법규나 규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보건 정책 등을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 밖의 안전보건 법규나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사항을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 제2장 안전보건경영 추진체계

### 제7조(거버넌스)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의 역할 및 성과평가 지표를 정의한다.

#### ① 안전보건경영 조직도



#### ② 최고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1. 최고안전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과 관련한 계획이나 활동, 성과 등을 관리·감독하고, 안전보건 경영 정책에 대한 제/개정 심의, 안전보건 리스크 검토 및 대응방안 논의, 안전보건 추진성과 점검, 안전보건 설비 및 시설 인프라 투자 검토 등을 이행한다.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보건과 관련한 예방계획 수립, 관리규정 작성, 작업환경 측정, 산업재해 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그 밖에 사업장 유해위험 예방 조치 등을 위해 다음의 세부 활동을 이행한다.

부서	담당자명	역할	세부 활동
경영기획팀	안태승 차장	안전보건업무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제·개정</li> <li>- 안전보건활동 계획의 수립 및 이행</li> <li>- 사업장 업무환경 측정 및 설문조사</li> <li>- 정기 안전보건교육 진행 및 이수율 파악</li> <li>- 안전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li> <li>- 안전보건 캠페인 또는 훈련 실시</li> <li>- 안전성과 경영진 보고</li> </ul>

###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성과평가 지표(KPI)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실천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안전성과 및 안전보건 업무 이행 현황’을 해당 담당자 KPI에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순서	안전보건성과 평가지표	평가기준					가중치
		A	B	C	D	E	
1	안전보건규정 수립 및 제·개정	실시	-	-	-	미실시	1%
2	사업장 안전보건점검활동 실시	2회 이상	-	연 1회	-	미실시	1%
3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매분기	-	연 2회	연 1회	미실시	2%
4	산업안전보건교육 평균 이수율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2%
5	업무환경관련 설문조사 실시	실시	-	-	-	미실시	2%
6	안전관련 캠페인/훈련 실시	실시	-	-	-	미실시	1%
7	안전보건성과 경영진 보고	실시	-	-	-	미실시	1%

※ 안전보건 이외의 업무에 대한 KPI 지표는 개인 성과평가 파일에 별도 명시함.

## 제4장 안전보건 교육

### 제8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 ①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 ②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교육(또는 가스·전기·교통 관련법)을 포함한다.
- ③ 안전·보건교육은 회사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이라 함)과 관계 법령에 의거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 ④ 안전보건교육은 교육 대상 및 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신규 채용에 따른 교육, 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교육, 물질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 ⑤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 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이나 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정기교육)**

- ① 정기교육은 회사 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매분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 ② 정기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 3.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 개선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5.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6. 안전보건 점검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7. 안전사고 사례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8. 무재해 추진실적 및 기법에 관한 사항
  - 9.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10. 방호조치 및 방호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 11. 안전표지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12.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교육이력 기록 및 보존)**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또는 이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존해야 한다.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교육일시와 장소, 교육 담당자,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교육 강사에 대한 자격)**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 ①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

**제12조(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임직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한다.

구분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방법
정기교육	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3시간	전 임직원
	2024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3시간	전 임직원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3시간	전 임직원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3시간	전 임직원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13조(안전보건경영 선언)**

‘지속가능한 IT 비즈니스 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지속가치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의 선행적 예방이 실천되는 선진화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실천한다.

① 안전경영 체질 개선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방침 실천을 위해 전사 통합 안전보건 조직체계를 구축하며, 안전보건 수준 상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담당자의 성과평가지표(KPI)에 안전성과 및 안전보건업무 이행 현황을 반영한다.

② 중대재해 집중 예방

안전사고나 질병발생 등을 지속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연간 안전보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 예방 점검 활동을 확대하며, 안전보건 리더십 및 실행력을 강화한다.

③ 임직원 안전의식 향상

임직원이 일상 생활에서 안전보건 실천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콘텐츠를 제공하고, 참여형 안전보건 캠페인을 추진하며,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매뉴얼 및 훈련을 제공한다.

#### ④ 그 외 사항

사업영역 확장 등으로 인해 위험한 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게 되거나, 유해환경 등에 노출되는 등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정책을 준수하여 안전보건경영을 실천한다.

1. 위험성 평가 : 사업장에서 사고 및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되, 위험성평가 이후 여전히 남아있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2. 안전보건표지 부착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표지, 비상상황 시 대응하기 위한 안내판 등을 식별 가능한 위치에 부착한다.
3. 작업환경 안전조치 : 작업환경 내 추락, 붕괴, 낙하, 천재지변, 기타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를 관리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유지·보수·점검한다.
4. 기계·기구·설비 안전조치 : 기계·기구·설비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방호조치를 취하고, 잠재 위험이 없도록 유지·보수·점검한다.
5. 건강장애 예방 및 보건조치 : 원재료, 가스, 증기, 고온, 소음 등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및 보건조치를 취한다.
6. 개인보호장비 지급 : 작업환경 등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예비보호구를 비치 및 관리한다.
7. 안전보건 진단 : 추락이나 붕괴, 화재, 폭발, 유해물질 누출 등 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한다.
8. 비상상황 대응 : 추락, 붕괴, 화재, 폭발, 유해물질 누출 등 재해상황별 비상상황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을 지속하고, 관련 소방장비 등의 기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제14조(안전보건경영계획의 수립 및 이행)

- ①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5조(안전보건경영보고서 작성 및 공시)

회사는 당해 연도 안전보건경영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보건경영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경영보고서를 작성 및 공시해야 한다.



## 제16조(안전보건진단)

- ①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진단을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 지방청(또는 지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교통재해 예방)

- ①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정해진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해야 한다.
- ②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③ 임직원이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 제18조(작업중지 등)

-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담당자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임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 제19조(비상조치계획)

회사는 안전점검활동 등을 통해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20조(피난 및 대응훈련)

회사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 제21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 ① 회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② 비상연락체계는 회사 내부 연락처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제4장 사업장 보건관리

### 제22조(작업환경측정)

- ①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 예비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해야 한다.
- ③ 회사는 작업환경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를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 ④ 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23조(근로자 건강진단)

- ①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6. (회사의 자율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자율 건강진단

- ② 임직원은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 ④ 회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제4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⑦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24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자는 관계법령 및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제외한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사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제25조(근골격계질환 예방)

- ① 회사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 ③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해야 하며, 요양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할 경우 해당 임직원과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특성상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회사는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6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 ① 임직원이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 및 시행
  -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
  -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
  - 4.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
  - 5.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

### 제27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 ① 회사는 임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나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의 성별이나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회사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장 안전보건경영 목표 및 세부계획

### 제28조(안전보건경영 목표)

무재해 달성, 건강한 업무환경 제공 등 안전보건경영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IT 비즈니스 기업’

### 제29조(안전보건경영 세부계획)

목표	세부계획	이행시기 및 주기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안전보건규정 수립 및 제·개정	2024년 末
	사업장 안전보건점검활동 실시	연 1회
	업무환경관련 설문조사 실시	연 1회
	전사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ISO45001 취득	2026년 末
안전보건문화 정착	임직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분기 1회
	안전관련 캠페인 또는 훈련 실시	연 1회

## 제6장 안전보건경영 성과평가

### 제30조(성과평가체계)

회사는 경영진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감독 하에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위반 행위가 신고되는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이슈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평가를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제31조(성과평가결과 및 시정조치)

안전보건경영 성과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평가기간이나 평가분야, 평가요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매년 말 안전보건경영 성과평가보고서를 취합하여 연도별 미흡사항 건수를 집계하고, 미흡사항 중 개선이 완료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건수도 함께 집계하여 아래 표와 같은 형태로 기재 및 보고해야 한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미흡사항(건)	-	-	-
개선완료(건)	-	-	-

##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제32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 ① 회사는 사고발생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관련 임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기한 내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⑤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고대책 본부나 사고조사 위원회 등을 별도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 ⑥ 회사는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33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또는 부서장)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최고안전관리책임자(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해야 한다.
-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④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점검하고, 최고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해야 한다.

### 제34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회사의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연간 재해분석 결과를 모든 임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 부 칙

1. 본 정책은 2022.07.04 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2. 본 정책은 2023.06.19 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정책은 2024.04.05 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